

2019년도 제1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8. 7.(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 심의위원 : 손승수(분과위원장), 강상욱, 백대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안건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1건(안건번호 제2019-88947호~89046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심의 안건인 복제물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최신 방송물들로 창작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여 공중이 이를 감상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함

심의안건 복제물들에 대해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복제물 파일의 업로드 등으로 각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될 개연성이 높음

심의안건 복제물들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순기능을 유도

- B 위원 : 금회 안건은 후르츠 바스켓,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프로듀스 X 101 등 다량의 방송 콘텐츠의 데드카피임. '도도파일' 사이트 등을 통해 이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모두 가결 의견임

- C 위원 : 본건 심의안건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고,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며, 저작권자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됨. 특히, 이번 안건은 모두 최근에 개봉한 국내외 영상저작물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안전번호 제2019-88947호~89046호는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 안전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되어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9년 제14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7.

분과위원장 손승우

위원 강상욱

위원 백대용